

2) 정비사업비 증가 및 중후평가 재실시

구분	기정(관리처분 인가시)	변경(관리처분 변경신청시)
공사비	총 2,136억원	총 2,298억원
정비사업비	약 3,962억원	약 4,294억원
중후평가	전체아파트분양가 442,748,950,000원	전체아파트분양가 489,947,500,000원
	근린생활시설 3,684,800,000원	근린생활시설 3,749,800,000원

3) 선의복지재단 자격변경 및 매각 체결

- 선의복지재단 파산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자격 변경(2020.8.13. 총회의결)
- 최종 매각 금액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각(2021.12.13. 계약). 끝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40호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관악구 신림동(서원동) 409-151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

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09-151 / 2,341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시행자명	대표자	주소
황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	송영팔	서울시 관악구 서원10길 24

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6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2.03.17.

6.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높이(m)	건축물의 주용도
2,341	48.04	149.19	4,923.72	15.2	공동주택

7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- 지하2층/지상5층, 3개동
- 도시형 생활주택(53세대)

8. 분양·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구분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)											
	47F-1 (47.88)	50B-1 (51.20)	50B-2 (49.47)	51F (51.02)	55E-1 (54.75)	56B (56.38)	56E (56.49)	57A (57.72)	58C (58.52)	58C-1 (58.07)	58D (57.18)	58D-1 (57.04)
분양	1	1	1	1	1	3	1	35	4	1	3	1

9.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0. 기타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주택과(☎02-879-6321)에 비치 보관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2-41호 -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에 따른 -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유흥시설, 음식점·카페·제과점 등에 대하여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적용기간 : 2022년 3월 21일(월) 0시 ~ 4월 3일(일) 24시

※ (경과규정)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 4. 4.(월) 05시까지 적용

2. 적용대상

○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

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콜라텍)

※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(일반음식점 등도 적용)

○ 서울시 관악구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
※ 홀덤펍은 식당·카페, 홀덤펍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 적용

3. 적용내용 : 위 기간 동안 사적모임 제한 변경

○ (현행) 7인 이상 금지 → (변경) 9인 이상 금지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

○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
○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
○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5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